

백인대장 더보스관 학원 교습비등 게시표(제8조 관련)

2024년 12월 01일 현재

| 교습과정 | 교습과목 | 정원 (반당) | 월교습시간 (분) | 월교습비(원) | 교습 기간 (○월) | 기타경비 |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| | | | | | 구 분 | 금액 (원) |
| 보습단과 | 모의고사1(고등) | 47 | 480 | 60,000 | 4주 | | 0 |
| 보습단과 | 모의고사2(고등) | 47 | 480 | 100,000 | 4주 | | 0 |
| 보습단과 | 고등수학1 | 47 | 2400 | 500,000 | 4주 | | 0 |
| 보습단과 | 고등수학2 | 47 | 2640 | 500,000 | 4주 | | 0 |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2024년 12월 01일

(✓) 학원설립·운영자[() 교습소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] : (서명 또는 인)

- 주:
1. 게시표와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.
 2. 모든 교습과정, 교습과목, 반에 대한 교습비등을 기재합니다.
 3. 게시는 학원·교습소의 내부 및 외부(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 장소의 내부)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.
 4. 기타경비 항목: 모의고사비, 재료비, 피복비, 급식비, 기숙사비, 차량비